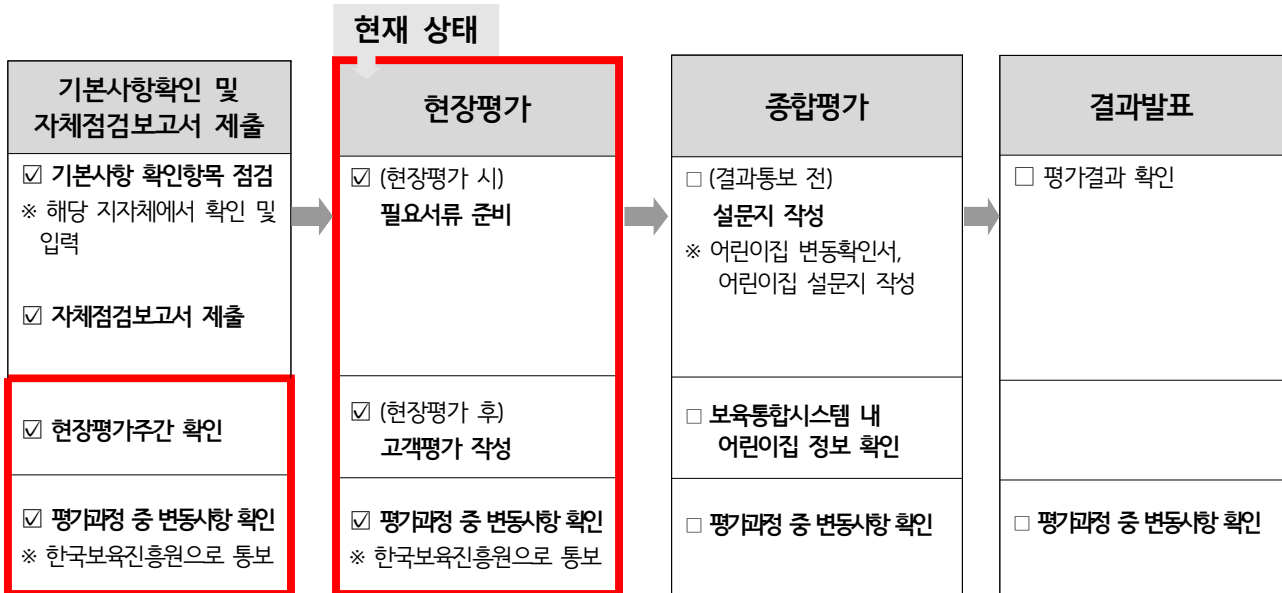


현장평가주간 확인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

안녕하십니까?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사업국입니다.

현장평가주간 확인 방법 및 현장평가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.



1. 현장평가주간 확인 (현장평가주간 공지일: 2022. 1. 24.)

현장평가주간 확인 방법(상세내용은 첨부파일[붙임3] 참조)

- ①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로그인 ⇒ 어린이집 평가 ⇒ [평가진행과정확인] 클릭
- ② [현장평가주간 확인] 클릭
- ③ 현장평가주간 확인 후, 웹페이지 메시지의 [확인] 클릭
- ④ 어린이집 진행이력에 입력된 '현장평가주간' 확인

2. 현장평가 관련 안내

현장평가 실시 전 유의사항

- ① 대부분의 문서는 **현장평가일 이전 3개월부터 현장평가일까지의 기록을 확인**하며,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평가항목(예: 신입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, 건강검진 서류 등)의 경우 전년도 문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※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현장평가 준수사항 및 평가기준 관련 내용 첨부파일[붙임4] 확인

- ② 보육일지는 담임 보육교사가 실제 운영한 하루일과 및 놀이실행에 대해 기록하는 것입니다. 최근 월간잡지 등의 보육일지를 그대로 복사하여 평가결과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③ 보육교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며, 체납여부를 확인합니다.
- ④ 보육교직원 임금의 경우 보육사업안내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되, 인건비 미지원의 어린이집이라도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.
※ 최저임금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설명 자료 참조
- ⑤ 현장평가는 현장평가주간 중 사전 고지 없이 실시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⑥ 현장평가일 이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(영유아 재원)된 어린이집에 한해 현장평가가 진행되며, 평가과정 중 '현원 0명'으로 확인되면 평가 과정이 중단됩니다.

□ 현장평가 시 유의사항 (2021 평가매뉴얼 p.29~34, 정오표 참조)

- ① 현장평가 시에는 특별한 행사 없이 일상적인 일과가 진행되어야 하며 현원의 2/3 이상 출석하여야 합니다. 따라서 현장평가 주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평가 당일 행사, 견학 등으로 인한 출석기준 미충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출석기준 미충족으로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평가가 중단되며, 사유확인 후 현장평가자를 재파견함. 단,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출석기준 미충족인 경우, 진흥원과 협의 후 진행 가능
- ② 현장평가 당일, 현장평가자 2명(99인 이하 어린이집)이 현장평가자증을 패용하고 어린이집을 방문합니다.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, 코로나19로 외부인의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원을 고려하여 현장평가자 2명 또는 3명이 방문합니다.
- ③ 관찰반은 영·유아 모두 재원 시, 현장평가자가 영아반과 유아반 각각 1개반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정하며, 영아반 또는 유아반만 있는 경우에는 그중 2개반을 선정합니다.
- ④ 현장평가일에는 보육교직원의 임용 여부를 확인하며, 타 어린이집에 임용 중인 교직원(원장 포함)은 평가어린이집에 근무하거나 지원활동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어린이집에 미임용 교직원이 있는 경우 현장평가자와 원장은 미임용 교직원이 타 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여 '현장평가 상호확인서'에 해당 내용을 기록함
※ 현장평가 당일 임용되지 않은 사람이 영유아 보육활동 등에 참여하는 경우, 공정한 현장평가 진행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퇴실 조치할 수 있음 (해당 어린이집에서 실습 중인 '보육실습생' 제외)
- ⑤ 어린이집에서는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문서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평가 당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대표자 변경, 국공립 전환 등으로 인해 변경 이력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변경이력이 확인 가능한 변경인가증(앞, 뒷면)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.
- ⑥ 현장평가 시 문서 검토는 모든 반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, 「보육과정 및 상호작용」 평정을 위한 관찰은 관찰반을 중심으로 진행되나 비관찰반의 운영 상황도 평정될 수 있습니다.
- ⑦ 현장평가 시 정원초과, 보육교직원 허위임용, 등원거부, 교구대여, 인가공간 무단도용 등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**최하위 등급(D등급)**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⑧ 현장평가 시 '어린이집 운영기준 미준수'가 발견될 경우, 현장평가일 이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(미개선 시 최하위 등급 부여).

- ⑨ 기본사항 중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시에도 현장평가는 진행하되,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반영합니다(미준수 시 최하위 등급 부여). 단, **사전점검사항 미준수 항목의 개선완료 여부와 상관없이** 평가지표는 **현장평가일 기준으로** 평정됩니다.

3. 현장평가자 고객평가 실시 [첨부파일[붙임3] 참조]

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현장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「**현장평가자 고객평가**」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는 향후 제도 개선의 자료로 활용되며, 평가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고객평가는 현장평가 다음날부터 작성 가능하며, **1주일 이내에 작성**해 주시기 바랍니다(현장평가 당일에는 설문지 작성 불가).

□ 고객평가 작성방법

- ①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로그인 ⇒ 어린이집 평가 ⇒ [평가진행과정확인] 클릭
 - ② [현장평가자 고객평가 작성] 클릭 - 원장/교사 각각 클릭하여 작성
 - ③ 질문지 작성 후, ‘제출하기’ 클릭
- ※ 현장평가자 2명(100인 이상은 3명)에 대한 질문지가 이어져 있으므로 질문지 끝까지 확인 후 제출, 제출완료 후에는 수정 불가
 ※ 현장평가자 고객평가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에는 평가진행과정확인에서 [작성완료]로 표시됨

4. 변동사항 발생 시 유의사항 [2021 평가매뉴얼 p.36~38 참조]

- 평가과정 중인 어린이집에서 **선정통보일 이후*** 법 위반 및 행정처분, 인가 변동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, 어린이집은 발생사실을 **한국보육진흥원에 반드시 통보****해야 합니다.
- * 1661-5666으로 문의 또는 결과통보 전 설문지 내 변동사항 발생 해당으로 제출

〈평가과정 중 변동사항〉

□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

-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
- 행정처분(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, 제45조, 제45조의2, 제46조, 제47조, 제48조)을 받은 경우
-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폭력, 아동학대, 운영 부조리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고발 또는 고소되거나 수사, 재판 계류 중인 경우

□ 인가변동사항 발생

-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 - ※ 변경된 소재지에서 기본사항확인 단계가 진행 가능한 경우, 평가과정 그대로 진행됨
-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
 - ※ 현장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, 과정중단 없이 평가가 진행됨 (단,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대표자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되어 평가과정 중단됨)
- 어린이집이 6개월 이상 운영중단 후 재개한 경우: 재개일로부터 1년 경과 시 현장평가 진행